



# 동물병원 내 감염성폐기물 처리 관련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04.08.11)으로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의 보관기준이 '05.1.1부터 변경 시행됨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은 아래와 같이 보관·처리되고 있으며, 이중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해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이에 임상회원 여러분께서는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가 공급될 때 해당배출기관의 상호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합격통지서(검사성적서)를 확인한 후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주요 개정내용 및 동물병원내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

### 1. 동물병원배출 감염성 폐기물의 분류

	보관용기 재질	도형색상
손상성 및 액상의 폐기물	합성수지류 의무사용	황색
조직원류 및 동물사체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 선택사용	적색
기타 감염성폐기물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 선택사용	오렌지색

※ 손상성폐기물의 전용용기인 합성수지류 용기에서 내부 비닐주머니 제거

### 2. 보관기준

- 전용용기에 사용시 처음 감염성폐기물을 보관하는 일자(포장연월일에서 사용개시연월일로 변경)를 기재하여야 함
-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조직원류)는 발생시부터 냉동보관하여야 함
-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를 보관하여야 함

### 3. 보관기간

- 동물병원(위탁처리자) : 15일 이하, 단 치아는 60일까지 보관가능
-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기타 부득이 하여 관할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 보관 가능
- 배출자의 보관기간은 감염성폐기물이 발생되어 전용용기에 담는 시점부터 적용
- 보관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만료일로 보나, 폐기물 처리업소(자가처리시설 포함)의 경우 해당 공휴일에 처리시설을 가동한 때에는 그 공휴일을 만료일로 봄(보관기간중의 공휴일은 기간에 포함) **대수**

